

「상주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8월 8일

상 주 시 장

상주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직원들 간 분산하여 대체휴무를 실시하여 업무 공백 방지
- 나. 긴급한 업무 처리, 비상근무 등으로 인한 대체휴무 사용이 어려운 경우,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휴식권을 보장

2. 주요내용

- 가. 당직 근무자 대체휴무 사용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자 함.
 - 대 상: 당직 후 다음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 인 경우
 - 내 용: [현행] 5일 이내 → [변경] 10일 이내 ※주말 및 공휴일 제외

3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8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(참조 : 총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연락전화: 054)537-7154
- E-mail: mina5302@korea.kr / FAX: 054)537-6089
- 시 홈페이지: www.sangju.go.kr(입법 예고란)
 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사유)
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연락처
 - 의견제출할 곳: (우37211)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

4. 그 밖의 사항

이 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역은 상주시 홈페이지(www.sangju.go.kr)
→ 행정정보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: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규칙명: 상주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건	비 고